

■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5. 20.>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방법 등(제14조의4제3항 관련)

1. 등급구분 ·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급 구분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가. 구분기준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 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인지를 평가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 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인지를 평가
나. 응시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을 갖추 것 1)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을 취득한 후 반려동물 관련 분 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반려동물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18세 미만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	18세 이상인 사람
다. 시험과목	1차 시험	1) 반려동물 행동학 2) 반려동물 관리학 3) 반려동물 훈련학 4) 직업윤리 및 법률 5) 보호자 교육 및 상담	1) 반려동물 행동학 2) 반려동물 관리학 3) 반려동물 훈련학 4) 직업윤리 및 법률 5) 보호자 교육 및 상담
	2차 시험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시행하고, 2차 시험은 실 기시험으로 시행한다.

나. 2차 시험 시 응시자가 반려동물에 대한 지도능력을 평가받기 위하여 동행하는 반려동물은 응시자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부모·자녀 소유여야 하며, 응시자 외 다른 사람이 해당 반려동물을 동행하여 동일 등급 2차 시험에 합격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3. 합격기준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1급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60점 이상
2급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60점 이상